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0. 5.

농 립 축 산 식 품 부
(동물복지정책과)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동물보호법」이 반려동물의 범위 및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에게 동물 등록에 관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라 고지하도록 시행규칙에 위임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동물등록의 방식에서 인식표를 사용하는 방식을 제외하고, 동물장묘 시설의 화장로 개수 제한을 폐지하는 등 시행규칙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반려동물의 범위 신설(안 제1조의2, 제4조제5항, 제35조)

「동물보호법」 개정('20.2.11)으로 반려동물의 범위 규정이 법 32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에서 법 제2조(정의)로 이동함에 따라 시행규칙 제35조에서 규정하던 반려동물 범위를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

나. 동물등록 방식 축소(안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제6호, 별표 2)

동물등록 방식으로 내·외장 무선식별장치 또는 인식표를 장착하고 있으나, 인식표는 훼손되거나 떨어질 위험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등록 방식에서 제외

다. 동물장묘 시설의 화장로 개수 제한 폐지(별표 9)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해 동물장묘 시설의 화장로 개수를 3개로 제한 하였으나, 반려동물 증가로 인한 장묘시설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화장로 개수 제한 폐지

라.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의 동물등록 관련 고지 의무 신설 및 구체화(별표 10)

동물판매업자가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동물등록과 관련하여 등록방법, 등록기한 뿐만아니라 변경신고 및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도 구입자에게 안내하도록 조문을 구체화 하고, 동물장묘업자는 등록대상동물을 처리하였을 경우, 소유자에게 등록사항의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의무 부여

3. 참고사항

가. 추진일정

1. 개정안 방침 : '20. 5월
2. 관계 부처 협의 : '20. 5월
3. 입법 예고 : '20. 5월
4. 규제 심사 : '20. 7월
5. 법제처 제출 : '20. 7월
6. 공포 : '20. 8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제1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2”를 “법 제2조제3호의2”로 하며,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반려동물의 범위)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3에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개·고양이·토끼·페럿·기니피그·햄스터를 말한다.

제4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법 제8조제2항제3호의2에 따른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관리 의무”는 별표 1의2와 같다.

제8조제2항 중 “한다) 또는 인식표”를 “한다)”로 한다.

제9조제1항제6호 중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를 “무선식별장치”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영업의 범위 및 시설기준)”을 “(영업의 시설 및 인력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영업의 시설 및 인력기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반려동물과

관련된 영업을 하려는 경우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인력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제36조제2호 중 “제35조제1항에 따른 동물(이하 “반려동물”이라 한다)”을 “반려동물”로 한다.

별표 1의2의 제목 중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에 대한 사육·관리 의무”를 “반려동물에 대한 사육·관리 의무”로 한다.

별표 2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무선식별장치 및 인식표”를 각각 “무선식별장치”로 하고, 같은 호 다 목을 삭제한다.

별표 9 제2호가목2)가)를 삭제하고, 같은 목 6) 중 “고려한”을 “고려하여 화장로의 개수 등”으로 한다.

별표 10 제2호가목에 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나목3)나) 중 “등록방법, 등록기한”을 “등록·변경신고 방법, 등록기간에 대한 사항 및 등록·변경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7) 등록대상동물을 처리하였을 경우, 동물의 소유자에게 제9조제1항제4호의 사유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을 반드시 알려주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제6호, 별표 2의 개정사항은 2021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제6호, 별표 2의 개정사항은 2021년 2월 12일 이전 인식표의 방식으로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한 사람에게
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조의2(반려동물의 범위)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3에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개·고양이·토끼·페럿·기니피그·햄스터를 말한다.</u>
<u>제1조의2(맹견의 범위)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맹견(猛犬)은 다음 각 호와 같다.</u> 1. ~ 5. (생 략)	<u>제1조의3(맹견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의2-----</u> ----- -----. 1. ~ 5. (현행과 같음)
<u>제4조(학대행위의 금지) ① ~ ③(생 략)</u> <u>④ 법 제8조제2항제3호의2에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를 말한다.</u> <u>⑤ 법 제8조제2항제3호의2에 따른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에 대한 사육·관리 의무는 별</u>	<u>제4조(학대행위의 금지) ① ~ ③(현행과 같음)</u> <u><삭 제></u> <u>⑤ 법 제8조제2항제3호의2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관리 의무”-----</u>

현행	개정안
1. ~ 5. (생략) 6. <u>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는 경우</u> ② ~ ⑨ (생략) <u>제35조(영업의 범위 및 시설기준)</u> ① <u>법 제32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고양이·토끼 등 동물”이란 가정에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개·고양이·토끼·페럿·기니피그·햄스터를 말한다.</u> ② <u>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동물 관련 영업별 시설 및 인력 기준은 별표 9와 같다.</u> 제36조(영업의 세부범위)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동물 관련 영업의 세부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동물판매업: <u>제35조제1항에 따른 동물(이하 “반려동물”이라 한다)을 구입하여 판매, 알선 또는 중개하는 영업</u> 3. ~ 8.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6. <u>무선식별장치</u>----- ----- ----- ② ~ ⑨ (현행과 같음) <u>제35조(영업의 시설 및 인력기준)</u> <u>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반려동물과 관련된 영업을 하려는 경우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인력 기준은 별표 9와 같다.</u> 제36조(영업의 세부범위) ----- ----- ----- --. 1. (현행과 같음) 2. ----- <u>반려동물</u>----- ----- ----- ----- 3. ~ 8. (현행과 같음)